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11. 26.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53호로 2013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함.

3.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유가족
사망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도 유가족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는 조례제정 이후 생존해 계시다 돌아가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현 조례를 개정하여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기준 시점을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희생·공헌자의 유가족으로 정한 것은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되고 향후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며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인 유가족의 범위와 적용시점 등을 구체화하는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국가보훈 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